

이사회 운영기준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홀딩스

제정 2002. 07. 01.

개정 2021. 11. 10.

개정 2023. 08. 11.

개정 2023. 12. 27.

개정 2025. 02. 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의무) ①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전향과 관련하여, 회사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각종 위원회의 의견 등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주주 및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제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종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1회씩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

(5) 정관의 변경(신설 1998.9.16)

(6) 자본의 감소(신설 1998.9.16)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규투자
- (3) 주요종속회사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 (6)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7) 공동대표의 결정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1) 삭제
- (1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3)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1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7) 기타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본 조에서 말하는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을 말함.

- (1)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 시설증설 등 투자에 관한 사항
 - 나.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등 지분증권 취득 또는 처분. 단, 펀드등 재무적 투자(FI) 목적의 지분증권 취득 또는 처분은 제외함.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본 규정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자기자본 2.5% 이상의 계약 체결
- (3)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자산총액 2.5% 이상의 유·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단, 단순 자금운용 등을 위한 금융자산 등의 취득은 제외함.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 자금도입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자금 조달로써, 금융기관의 조달 한도 확보 행위를 포함.
단, 기초달 약정의 단순 연장 또는 대환은 제외함.

(12) 담보 제공 및 채무 보증

가. 자기자본 5% 이상의 회사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나. 자기자본 2.5%이상의 계열회사등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 보증.
단, 입찰, 계약, 하자등 이행보증은 제외함.

(13) 채무인수 및 면제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

(14) 금전대여등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대여, 선금금, 가지금금의 지급.

(1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6) 자기주식의 소각

(17) 기타 회사의 재산상태등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거래 승인등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건당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 ①이사회는 주주 및 경영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희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행위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①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영실적 및 계획 등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외이사는 회사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정책을 이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담당조직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재무담당 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담당한다.

제20조(평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